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1259호

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5월 24일
서울특별시

☐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

연번	상 호	등록번호	등록일자	영업소 소재지
1	노이즈엔지니어링(주)	제133호	2018.5.14.	서울시 서초대로22길 8, 3층 (방배동, 미소빌딩)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1266호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2-12번지 일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위한 『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』 결정(안)에 대하여 2018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5월 24일
서울특별시

가. 열람기간 : 2018. 5.25.~2018. 6. 7.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)

나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(☎ 02-2133-7053)

다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서초구 서초동 1502-12번지 일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구 서초동 1502-12번지 일대	-	증)2,557.9	2,557.9	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

가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■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2,557.9	-	2,557.9	100.0	
제2종일반주거지역	2,557.9	감 2,557.9	-	-	
준주거지역	-	증 2,557.9	2,557.9	100.0	

■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나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

가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구분	가구번호	획지		비고
		위치	면적(㎡)	
신설	-	서초동 1502-12대	2,557.9	
		서초동 1502-3대		

나)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지정용도(A) (주거부분)	·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2호의 공동주택 ^{주1)} (주거비율 : 용적률의 85%이상)	
불허용도(가) (비주거부분)	·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·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 ·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· 위락시설·공장·창고시설·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·장례식장 ·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	

주1)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,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함